

■ 제주특별자치도-녹지국제병원 제주 영리병원 재판 시작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성 여부 쟁점

녹지 “도지사에게 진료대상 정할 재량권 없어… 위법”
도 “제주특별법 따른 정당한 사유… 법적인 하자 없다”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적법성 여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녹지 측은 제주도가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녹지 측 변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에게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대상을 정할 재량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토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측 변호사는 “도지사 를 취할 수 있는데도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면서 “이는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측 변호사는 “조건부 허가 부당하다면 우선 개원하고 나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다뤄야 하는 데 녹지 측은 개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허가 취소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녹지 측은 ISD(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를 통한 국제 소송까지 언급했다.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과 개원허가 취소는 한중 FTA에 담긴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ISD는 한중 FTA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촉발됐다. 녹지 측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법정 개원 시한 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17일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재판 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소송 철회와 제주특별법에 담긴 영리병원 개설 가능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도민운동본부 등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소송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동물뼈 불법투기 용의자는 목장 관리자

“식당에서 음식물 받아 소 먹인후 남은 것 버려”
제주시 조사… 7.5t 추산

속보=본보의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20일자 4면)와 관련해 제주시가 해당 사건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1일 제주시 해안동 소재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5t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쓰레기들은 인근 목장 관리자가 불법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장 관리자는 제주시에 “지인 식당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소 먹이로 사용 후 남은 것들을 버렸다”며

“투기 행위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증거용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물웅덩이에서 시료로 쓸 물 소량을 채취한 후 목장 관리자에게 쓰레기 수거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로 인한 침투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관리자에게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도록 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술서 및 고발장을 작성한 후 급주 내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하천 등의 장소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식기자 ik012@ihalla.com

예래단지 토지구 6명 땅 되돌려받아

토지구용재결처분 무효소송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 당한 일부 토지구주들이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돌려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 용지로 토지를 편입 당한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토지구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구용재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A씨 등 원고 6명은 예래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됐던 토지 1만여㎡를 돌려 받는다. 예래단지를 둘러싼 토지구용재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부 토지를 강제수용 방식으로 확보해왔는데, 2015년 대법원이 예래단지는 옛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있던 토지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예래단지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그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이뤄진 토지구용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부 토지를 강제수용 방식으로 확보해왔는데, 2015년 대법원이 예래단지는 옛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있던 토지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예래단지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그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이뤄진 토지구용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승소한 토지구주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기자

일반마스크 보건용으로 허위 납품 2명 기소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허위 납품한 유통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25일쯤 일반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의 시합·검사 성적서 등을 허위로 첨부해 일반

마스크 1만장을 도내 대형 마트 등에 허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통한 일반 마스크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기형 전 한라일보 논설고문 별세

이기형(사진) 전 한라일보 논설고문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일본에서 태어나 1944년 제주에 온 고인은 언론기관이 없던 제주에서 1945년 제주신보 설립을 위한 장간 요원으로 참여했고 1952년 탐라신보 외신부장, 1969~1978년 남양문화방송 편성부장과 보도부장, 1979~1980년 제주신문 논설위원을 지냈다. 1989년 창간한 한라일보에서는 이사 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속’(2018)에는 고인이 1946~48년 신성여자중학교에 재직하며 최정숙 선생을 도와 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고 신성학원 교가를 지었다고 나와있다. 제주여고와 오현고 교사도 지냈다. 교육·언론 분야 만이 아니라 1962년엔 제주연구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89년 언론·출판부문 제주도문화상을 비롯 제주방송인대상, 한라산약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1990년에 펴낸 ‘풍속도’가 있다. 빈소는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8시30분. 연락처 010-9840-1355, 010-5445-941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코로나19 제주 10·11번 확진자 퇴원

두차례 검사서 모두 음성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5명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갔다.

제주대학교병원에는 21일 도내 코로나19 열번째 확진자인 A(25·여)씨와 열한번째 확진자인 B(36)씨가 퇴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두차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 기준을 충족했다.

A씨는 지난 2일 영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제주에 온 유학생으로, 제주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양

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아홉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환자로 지난 1일부터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를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퇴원하면서 제주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명으로 줄었다.

제주도는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일주일 이상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새로운 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송병철 제주대학교병원 원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등 철자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SINCE 1989
한라일보 31주년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풍요와 번영과 행복의 섬 제주, 활력과 미소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언론의 역할을 다하며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의 희망지로 독자들과 제주도민의 더 큰 사랑 받기를 기대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김상언

부회	장	현	군	출	이	사	신	상	배	이	사	홍	광	택
이	사	강	주	영	이	사	양	원	현	감	사	김	병	철
이	사	김	성	지	이	사	이	기	주	이	사	김	영	일
이	사	송	경	철	이	사	정	진	호	서	구	지	영	우
이	사	송	정	훈	이	사	좌	경	웅	사	구	지	영	우
							좌	경	웅					
							현	태	준					

제주시 동광로 1길 1, 5층(이도일동) / TEL.752-3248, FAX 756-3248